

연구장비성능평가 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	접수일		
실무 담당자		성명	직위	전화번호(팩스번호)	전자우편주소
신청업체	업체명	(기업명)		개업 연월일	
		(홈페이지)			
	대표자명 (성별/생년월일)		사업자등록번호		
	①소재지		전화번호	팩스번호	
	1.				
	2.				
신청장비	②장비명	(국문)			
		(영문)			
	③장비모델명		④품명		
	⑤세부 품명번호		⑥물품식별번호		
	⑦기술성숙도 (TRL단계)	[] 시제품단계 [] 제품화단계(판매 준비) [] 사업화단계(판매 시작)			
	⑧혁신제품 지정 유무	1.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[]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·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·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[]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(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)을 개선·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·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·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2.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 []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,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 [] 친환경, 신산업,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3. 해당사항 없음 []			
		⑨관계 표준규격		⑩관계 규정	
		1.		1.	
		2.		2.	
	3.		3.		
연구장비 유형	[] 광학·전자영상장비 [] 화합물 전처리·분석장비 [] 물리적 측정장비 [] 그 밖의 연구장비(연구장비 소프트웨어 등)				

「연구산업진흥법」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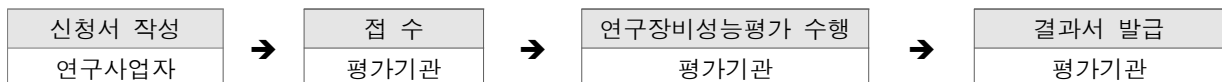
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첨부서류	1. 연구장비 세부 사양서 2. 연구장비 취급 설명서 3. 연구장비성능평가 항목 제안서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연구장비 성능평가신청서 작성방법

- ①의 “소재지”란의 작성사항 “1”에는 기업의 주된 소재지를 작성하고 “2”에는 부소재지를 작성합니다(지점이나 부소재지가 없다면 “2”란은 비워 놓습니다).
- ②의 “장비명”란에는 제품 판매 시 사용되거나 사용 예정인 명칭을 작성합니다.
- ③의 “장비모델명”란에는 기업에서 관리하는 장비의 고유한 이름이나 번호를 작성합니다.
- ④의 “품명”, ⑤의 “세부 품명번호”, ⑥ “물품식별번호”란에는 상품정보시스템(나라장터)에서 조회되는 이름과 번호를 작성합니다. 다만, 현재 제품화·사업화 전 단계인 경우에는 “해당사항 없음”으로,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“미등록 제품”으로 작성합니다.
- ⑦의 “기술성숙도(TRL단계)”구분은 제품의 사업화 진행 단계를 작성합니다. 다만, ‘기초단계’, ‘실험단계’의 연구장비는 성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.
- ⑧의 “혁신제품 지정 유무”구분은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에 따라 “혁신제품”으로 지정된 제품인 경우 해당란에 작성(중복 가능)하며, 혁신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‘해당 사항 없음’으로 작성합니다.
- ⑨의 “관계 표준규격”란은 해당 장비에 적용되는 국내외 표준규격[예시: 국제표준화기구(ISO)인증규격, 한국산업표준(KS)규격 등]의 이름이나 번호를 작성하며,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어도 됩니다.
- ⑩의 “관계 규정”란은 장비 취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규정(예시: 「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」, 「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등)을 작성하며,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어도 됩니다.

처리 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